

2025년 「(Astellas)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창업기업 모집 공고

일본 소재 글로벌 제약기업 Astellas와 협업하여 국내 창업기업의 글로벌 혁신 성장을 지원하는 「2025년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Astellas)」에 참여할 창업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K-Startup 누리집 가입 시 실명인증이 되지 않는 경우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사전 실명등록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접수 전 필히 등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① 실명등록 대상 : 개명인, 외국인, 미성년자 등 인터넷 실명 확인 불가능자

② 실명등록 경로 : www.siren24.com (☎1577-1006)

* 실명 등록에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 K-Startup 누리집 - 고객센터 - 온라인매뉴얼 - 일반매뉴얼 - K-Startup 창업기업 실명등록 매뉴얼 참고

※ 예비선정자(기업)는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요청일 다음 영업일로부터 3일 이내 「2025년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국외 창업기업 여부'([붙임 기 국외 창업기업 판단 절차 및 기준 참고)을 체크하여야 하며, '국외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국외 창업기업 요건 확인 등을 위한 별도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별도 안내 예정)

1

모집 개요

- **사업목적** : 제약/바이오 분야의 혁신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Astellas 그룹과 협업을 통해 창업기업의 기술 고도화 및 글로벌 시장 진입 기회 마련

□ **지원대상** : Astellas와 협업을 희망하는 창업 후 업력 7년(또는 10년*) 이내 제약/바이오 분야 창업기업

* [붙임 4]의 신산업 또는 초격차 분야 중 1개 이상의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에 한하여, 업력 10년 이내까지 지원가능

□ **모집 분야 및 지원 규모** : 총 2개사 이내

협업기업	모집분야	지원규모
	제약/바이오	2개사 이내

* 적격자가 없을 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신청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후 7년 (또는 10년*) 이내인 자

* [붙임 4]의 신산업 또는 초격차 분야 중 1개 이상의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에 한하여, 업력 10년 이내까지 지원가능

< 신청자격 관련 유의사항 >

■ **신청가능 업력**

- (창업 후 7년 이내) 2018년 4월 9일 이후 창업한 기업
- (창업 후 10년 이내) 2015년 4월 9일 이후 창업한 기업 (붙임 4 분야 해당시)

※ **창업일 기준**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 (개인·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 (**붙임 1**) 창업 여부 기준표 참고하여 신청 전 창업 여부 필히 확인)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 법인)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2호의2에 따른 '국외 창업'에 해당(**붙임 7** 국외 창업 기업 판단 절차 및 기준 참고)하는 경우, 국외 창업기업(대표자 포함)과 신청한 국내 사업장 등이 모두 '신청 자격' 등 요건에 부합하여야 함

* 추후 국외창업 요건 등과 관련된 증빙서류 별도 제출 필요

□ 신청 제외 대상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기업)

< ①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기업)

< ②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③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 ③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까지 환수금등을 전액 반환 완료한 자
2. 환수금등에 대해 회생 또는 파산절차에서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은 자
3. 환수금등에 대해 분할납부를 승인받아 정상납부 중인 자 (분할상환금을 연속 또는 누적하여 2회 이상 미납한 경우는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봄)

④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기업) ([붙임 2]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

⑤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타 중앙부처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중인 자(기업) ([붙임 6] 참고) ※ 중단 (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2025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626호)」 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사업 중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예비)창업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 단, 공고사업과 '동일연도'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의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⑥ 사업연도를 불문하고, 아래에 명시된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 중단 (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연도별 사업명 상이)

- '19~'20년 초기창업패키지(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 '19~'20년 창업도약패키지(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 '21~'22년 혁신분야 창업패키지(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 '23~'25년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 [참고] 세부 프로그램명 : 창구, 엔업, 마중, 다운다, ASK, 지중해, 정글, 미라클, I-Start(IBM 협업), 인텔 협업, 오픈AI 협업

⑦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기업)

⑧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 (기업)

⑨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 (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능한 자 (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⑩ 2025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⑪ 2025년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⑫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기업)

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⑭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기업)

□ 의무 및 역할

- 선정자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세부관리기준」 및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지침 및 기준 등은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

- 선정자는 Astellas에서 운영하는 사쿠라보*에 입주하여 스타트업 지원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야 함.

* SakuLabtm-Tsukuba는 일본 츠쿠바에 위치한 Astellas 츠쿠바 연구센터내 오픈 이노베이션 연구소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 선정자는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수령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대응자금(현금)을 창업진흥원이 정한 기한 내에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현물 투입이 있는 경우 해당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사업 운영과 사업비 관리 책임은 법인에 있으며, 사업비의 유용·횡령·편취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사업비 환수 시 모든 책임은 창업기업 대표(선정자)에게 있고, 지침 및 기준 등에 따라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3

지원 내용

- **협약기간** : 7개월 이내 (‘24.5월 중 ~ 11월 중 예정)
- **지원내용** : 사쿠라보 입주(일본소재), 사업화 자금, 주관기관 특화 프로그램 등

지원 구분	지원 세부사항			
사업화 자금 지원	▶ 시제품 제작, 지적권 취득, 사업모델(BM) 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 사업화 자금(정부지원금)은 창업기업의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div style="text-align: center;"> <p>< 정부지원금 한도 및 지원기간 ></p> <table border="1" style="margin: auto;"> <thead> <tr> <th>사업화 자금</th> <th>지원기간</th> </tr> </thead> <tbody> <tr> <td>최대 1억원 이내</td> <td>7개월 이내</td> </tr> </tbody> </table> </div>	사업화 자금	지원기간	최대 1억원 이내
사업화 자금	지원기간			
최대 1억원 이내	7개월 이내			

지원 구분	지원 세부사항
-------	---------

< 총 사업비 구성 >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대응자금	
	현금	현물
총 사업비의 70% 이하	총 사업비의 10% 이상	총 사업비의 20% 이하

*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 사업비 구성 예시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대응자금	
		현금	현물
143백만원	100백만원	15백만원	28백만원
100%	69.9%	10.5%	19.1%

비 목	비목 정의
재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 등을 구입하는 비용
외주용역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기계장치 (공구기구, 비품, SW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매하는 비용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관련 비용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기업 소속직원이 시제품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대표자 지급 불가) * 대표자, 대표자와 특수관계인(민법 제777조상의 친족관계의 자)은 인건비 지급 불가
지급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기자재임차비, 해외 액셀러레이터 보육 참가비 등)
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기업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교육훈련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기업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광고선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 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주관기관 특화 프로그램	<p>▶ 주관기관(창업지원 전문기관)이 보유한 전문인력,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교육, 멘토링, 투자유치, 마케팅 등 창업지원 특화 프로그램 지원</p> <p>※ 주관기관 역할 : 창업기업 지원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아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특화 프로그램 운영 및 창업기업 사업비 집행관리 등을 지원</p>
-----------------------------	---

지원 구분	지원 세부사항		
글로벌 기업 지원 (Astellas) 프로그램	▶ 글로벌 대기업 Astellas가 보유한 인프라, 기술력,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실험실 및 장비, 전문가 멘토링 등 지원		
	지원기관	지원 유형	지원 내용
	Astellas	실험/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 및 생물학 실험을 위한 즉시 사용 가능한 연구실(P1 유전자 재조합 실험 및 BSL2 수준의 생물안전도) ■ Shin Nippon Biomedical Laboratories 에서 운영하는 동물실험 장비 제공
		멘토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의약화학, 생물학, TS-PK/ADME, PK-ADME, 안전성, 인간 모방 기술, 타겟 제품 프로파일)분야 멘토링 ■ 지적재산(IP), 화학의약품제조관리(CMC), 규제, 사업 개발, 품질 관리(QA), 조달 등(디지털제외)
네트워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츠쿠바, 도쿄 지역 네트워킹 행사 ■ 아스텔라 및 바이오랩스 공동 주최 행사(웨비나, 현지행사) 	
<p>* 지원 유형 및 내용은 【붙임 3】 참조</p> <p>** 지원 프로그램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p>			

4

신청 · 접수

공고 기간 : 2025. 4. 8. (화) ~ 4. 21. (월), 17:00까지

신청 · 접수기간 : 2025. 4. 8. (화) ~ 4. 21. (월), 17:00까지

< 유의 사항 >

- ①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누리집' 가입 및 사업 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제출완료” 이후에도 신청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 가능)
- ② 접수마감일 **17:00 정각에 접수가 마감됨** (모든 신청절차를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 완료하여야 하며, 17시 이후 제출 불가)
- ③ 온라인 신청서 작성 이후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됨**
- ④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 완료된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 수정 및 삭제 불가

신청방법

- K-startup 누리집 (www.k-startup.go.kr) 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신청 시, K-Startup 누리집에서 ①실명인증 및 ②기업인증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누리집 가입 및 실명인증 필요

- ① **실명인증** :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 (외국인, 개명인, 미성년자 등 실명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전 실명 등록 및 적용 절차 진행 필수)
 - ② **기업인증** : 공동인증서(기업용), 금융인증서, SCI기업실명인증, 국세청사업자 확인 중 택1
- ※ 온라인 사업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별첨]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 참고

< 유의 사항 >

- ① '국외 창업기업'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보유한 국내 사업장 등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하는 국내 사업장 등은 아래의 요건 중 1개 이상에 해당하여야 함 (해외 사업자(외국에 등록된 사업자 등)는 사업 신청·접수 불가)
 - 국외 창업법인과 사업적 연관성(상업상 거래 실적 등)을 가진 국내 법인(국외 창업법인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
 - 국외 창업법인이 설치하고,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보유한 국내 사업장 또는 영업소
- ② 사업 신청은 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타인이 신청하는 경우 탈락 처리**

□ **신청절차** : ① www.k-startup.go.kr 누리집 접속 → ② 회원가입(개인회원) 및 로그인 → ③ 사업신청관리클릭 → ④ 사업신청 메뉴에서 『(Astellas)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창업기업 모집』 공고 클릭 → ⑤ 기본정보 입력 → ⑥ **제출서류 업로드(용량제한 30MB)** → ⑦ 제출

□ **제출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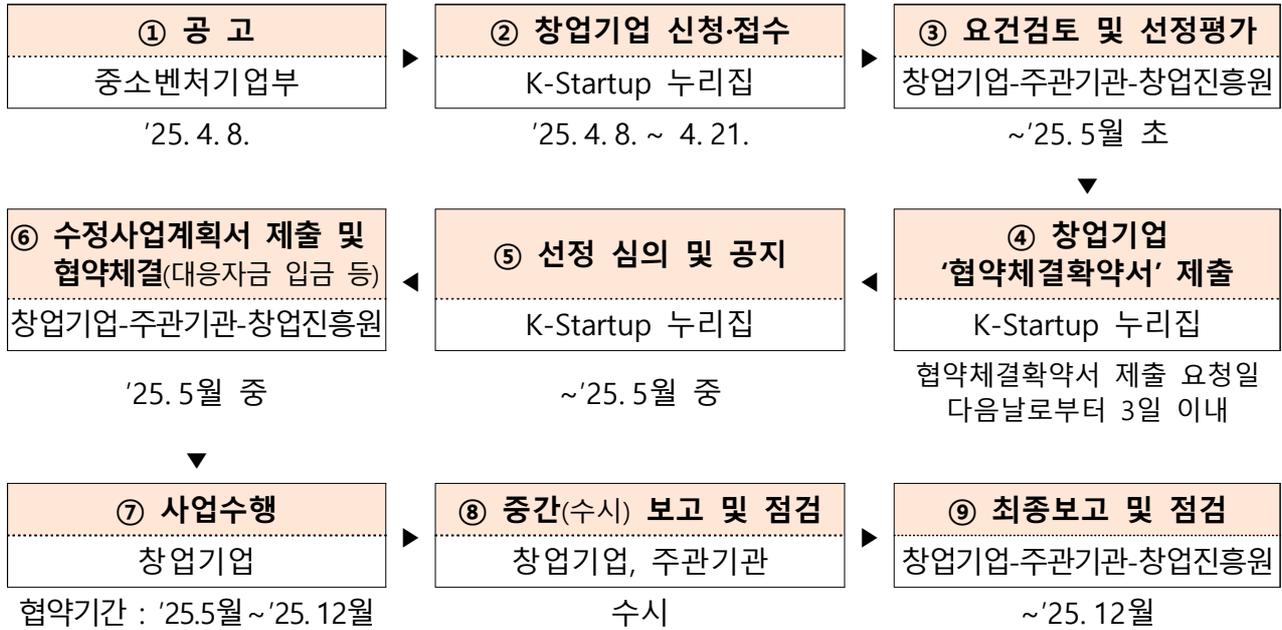
- **사업계획서(국문, 영문 각 1부)** [별첨 1] 양식
 - * 모집공고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양식 활용 (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기타 제출서류 각 1부(해당 시, [별첨2]의 증빙서류제출 목록 안내 참고)

제출서류	제출 방법	비고
① 사업신청서	시스템에서 자동 생성	-
② 사업계획서 (국문, 영문)	파일 첨부	용량제한 30MB
③ 증빙서류(필수 증빙 및 가점 관련 증빙서류 등 포함) * 관련 증빙서류 누락 시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가점 증빙서류는 **사업 신청 시 제출**하며, 미제출 시 가점으로 불인정

□ 추진 절차 및 일정

※ 추진 절차 및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5

평가 및 선정

□ 평가 절차 및 내용 (총 2단계 평가 : '서류' → '발표')

① 서류평가 :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프로그램별 2배수 내외를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

*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에 대한 진위여부 파악 등을 위한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허위로 밝혀질 경우, 최종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서류평가 결과 60점 미만인 자는 자격 미달로 발표평가 대상자에서 제외

< 가점 대상 >

구분	대상 기업	비고
서류평가 가점 (1점)	· '25년 「CES K-Startup 통합관」 참가기업 중 '25년 혁신상(최고혁신상 포함) 수상 기업	신청 시 '해당여부' 체크

② 발표평가 : 프로그램별 지원(예정) 규모만큼 고득점 순 선발

- 발표평가는 Astellas 본사에서 온라인 화상인터뷰로 진행됨에 따라 발표자료는 영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인터뷰도 영어로 진행

< 창업기업 선정평가 절차(안) >

평가단계		수행기관	수행내용
요건검토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 설립연월일, 신용정보 등 신청제외 대상여부 검토
1단계	서류평가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Astellas	·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서면평가
2단계	발표평가		· 창업기업 대표자 발표 및 질의응답 (영어인터뷰)
최종선정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 최종 선정 공지 및 정부지원금 안내

□ 최종선정

- 발표평가 결과 고득점 순으로 지원(예정) 규모만큼 선발하고, 사업 운영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 및 공고

* 발표평가 결과 60점 미만인 자는 부적격으로 선정하지 않음

** 평가 결과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차등 지원함

< 예비선정자(기업)의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

※ 예비선정자(기업)는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요청일 다음 영업일로부터 3일 이내(마지막 날 17시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025년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문자 또는 이메일을 통해 개별 발송 예정

※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확약서 제출 이전에 신청한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및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업사관학교)의 선정 절차(확약서 제출 전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제외'됩니다.

※ 단,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및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업사관학교)에 이미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하여 협약체결 예정인 사업이 있는 경우, 최초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협약체결(수행)이 가능합니다.

※ 제출한 '협약체결확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향후 사업 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평가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창업기업은 주관기관 혹은 창업진흥원이 별도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

□ 평가지표

- 창업 아이템의 개발·개선, 사업화 전략과 자금 조달 방안, 보유 역량, 글로벌 기업 협업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프로그램 선정 규모와 관계없이, 평가 단계별 취득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주요 평가지표 및 평가내용 >

평가지표	세부 내용
문제인식	• 아이템 개발 동기, 필요성 등
실현가능성	• 아이템 현황, 개선·고도화 방법, 경쟁력 확보 방안 등
성장전략	• 사업화 추진 전략 및 계획, 자금 조달 방안 등
기업구성	• 기업 구성, 보유 역량 등
협업 시너지	• Astellas 협업 가능성, 핵심전략, 협업 로드맵 등

6

유의사항

◆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창업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① 동 사업은 창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②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③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신청 과정에서 **제3자(컨설턴트 등)가 선정을 담보로 특정 사례를 요구하거나 접근해 온 경우, 아래 방법에 따라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창업진흥원 누리집(www.kised.or.kr) > 고객센터 > 기업민원 피해신고**

- ④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 동 사업 신청은 해당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동 사업 신청자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등)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 및 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 합의 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일지라도,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평가대상 제외, 선정취소,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은 본 공고에 따른 신청에만 국한되지 않고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함
-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 지침(기준), 기타 창업진흥원의 안내 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 선정 완료 후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지침(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평가 관련 유의사항

-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전 평가과정에 창업기업 대표(신청자)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평가 단계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 다음 날로부터 6일 이내 (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 1회에 한하여 평가를 운영한 주관기관에 신청 가능
- 주관기관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창업기업 대표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선정 및 협약 관련 유의사항

- '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과 동시 수행 (협약체결) 불가 (붙임 6 참고)
- * (주의) 2개 이상 사업의 공고 기간이 겹쳐 중복으로 선정되는 경우,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야 하며, 최초로 '협약체결' 하거나,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
-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확약서 제출 이전에 신청한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및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업사관학교)의 선정 절차(확약서 제출 전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제외' 처리됨
-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및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업사관학교)에 이미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하여 협약체결 예정인 사업이 있는 경우, 최초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협약체결(수행) 가능

- 제출한 협약체결확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향후 사업 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 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동 사업 세부 관리기준」,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
-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및 요건’과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정부지원사업비는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 수 있으며 ‘창업사업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총 사업비가 관리·운영됨
-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협약기간 중 신청(대표)자와의 연락이 두절되는 기간이 14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사업중단 또는 협약해지 될 수 있음
-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된 창업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계좌) 개설 및 창업 사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 관리

* 지정 은행(신한은행)의 계좌개설 및 거래가 불가능한 자의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동 사업의 수시·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계좌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
- 협약기간 내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 취소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협약체결일 이후 2개월 이내 협약 포기자 등이 발생할 경우, 발표 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자 중 추가 선발 가능
-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7

사업 신청 문의

신청·접수 시스템 문의

구분	문의처	비고
신청·접수시스템 (K-Statup 누리집) 관련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 없이 1357

사업 문의

No	주관기관	연락처	이메일
1	넥스트챌린지	02-6352-6422	ncf-global@ncf.or.kr

【붙임 1】 창업여부 기준표

창업여부 기준표

신청기업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0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이종	창업아님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법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0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창업아님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하 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 업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과점주주 여부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회사형태 변경	동종유지		창업아님	
	이종		창 업	

-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 ※ 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창업 범위의 변경에 따른 종전 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 ①2020.10.8.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시행령 제31108호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 "개인사업자 설립일이 '20.10.8. 이전이면서, 다른 장소에서 이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설립"한 경우 "창업"으로 판단
- ②영 시행(2022.6.29.)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붙임 2】 지원제외 대상 업종

지원제외 대상 업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No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2 1항 및 금융위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의거,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거래 제한에 따라, 해당 업태를 영위하는 자(기업)**

연번	업태명
1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2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를 이용한 시스템 통합구축 서비스 자문, 개발 및 판매
3	가상화폐 거래소업
4	가상화폐 개발업
5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6	가상자산 취급업
7	가상자산의 교환, 이전, 매매업
8	암호화폐 공개(ICO) 관련한 컨설팅 및 전문서비스업

* 단, 가상자산사업자 중 금융정보분석원 신고를 통해 영업이 가능한 사업자는 지원 가능

** 기준 업태는 추가·변경될 수 있음

【붙임 3】 지원내용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은 일부 변동될 수 있음)

1 Astellas 협업 프로그램

□ (운영목적) 제약 및 바이오 분야 초기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화학·생물학 실험 장비 및 글로벌기업 내 전문가 멘토링 제공



- (지원분야) 제약 및 바이오 분야
- (운영규모) 2개사 이내
- (지원내용) 아스텔라스 소속 전문가 멘토링, 일본 내 제약 기업 및 창업기업, VC와의 네트워킹 기회 제공

지원 기관	지원 유형	지원 내용
중기부	사업화 자금 지원	· 제품 및 서비스 개발, BM 고도화, 기업 운영 등을 위한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지원
	특화 프로그램 제공	· 주관기관 보유 인프라를 활용한 창업교육, 멘토링, 투자유치, 네트워킹 등 특화 프로그램 제공
아스텔라스	실험/설비	· 화학 및 생물학 실험을 위한 즉시 사용 가능한 연구실(P1 유전자 재조합 실험 및 BSL2 수준의 생물안전도) · Shin Nippon Biomedical Laboratories 에서 운영하는 동물실험 장비 제공
	멘토링	· 연구(의약화학, 생물학, TS-PK/ADME, PK-ADME, 안전성, 인간 모방 기술, 타겟 제품 프로파일)분야 멘토링 · 지적재산(IP), 화학의약품제조관리(CMC), 규제, 사업 개발, 품질 관리(QA), 조달 등(디지털제외)
	네트워킹	· 츠쿠바, 도쿄 지역 네트워킹 행사 · 아스텔라 및 바이오랩스 공동 주최 행사(웨비나, 현지행사)

【붙임 4】 신산업 창업, 초격차 분야

신산업 창업 분야

* 관련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유망 신산업·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 신산업 27대 분야 >	⑩ 자율주행차	⑳ 신재생에너지
① 인공지능	⑪ 전기수소차	㉑ 이차전지
② 빅데이터	⑫ 바이오	㉒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③ 5G+	⑬ 의료기기	㉓ 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
④ 블록체인	⑭ 기능성 식품	㉔ 우주
⑤ 서비스플랫폼	⑮ 드론·개인이동수단	㉕ 차세대 원전
⑥ 실감형콘텐츠	⑯ 미래형 선박	㉖ 양자
⑦ 지능형 로봇	⑰ 재난/안전	㉗ 사이버 보안
⑧ 스마트 제조	⑱ 스마트시티	/
⑨ 시스템반도체	⑲ 스마트홈	

초격차 분야

* 관련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대책('22년 10월)

< 초격차 10대 분야 >	④ 친환경·에너지	⑧ 우주·항공·해양
① 시스템반도체	⑤ 로봇	⑨ 차세대 원전
② 바이오·헬스	⑥ 빅데이터·AI	⑩ 양자기술
③ 미래 모빌리티	⑦ 사이버보안·네트워크	/

【붙임 5】 FAQ

1. 사업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 사업 신청은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우편 또는 방문 신청 등은 불가합니다.

2. 사업 담당자 계정으로 회원가입하여 신청하면 될까요?

☞ 사업 신청은 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회원가입 후, 대표자 계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서류상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탈락될 수 있습니다.

3. 창업기업 해당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모집공고 내 '붙임 1 창업기업 기준표' 자가진단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4. 글로벌 기업 협력 프로그램에 참여이력이 있는데 협약 기간이 종료되었으면 중복해서 신청이 가능한가요?

☞ 불가합니다. 사업연도를 불문하고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기업은 중복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5.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의 '창업사업화 및 글로벌 지원사업'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K-Startup 홈페이지 상단의 '사업공고 > 모집중 > 2025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사업소개 > 2025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 중앙부처'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를 포함한 중앙부처의 창업지원사업 중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에는 중복참여 불가합니다.

6. '24년 창업지원사업 중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 중입니다. 2025년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2024년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협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2025년 사업에 참여가능합니다. 단, 2025년 창업지원사업 중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현재 참여하고 계시는 경우 중복 참여 불가합니다. (붙임 6 참고)

7. 사업계획서 작성 시 양식을 수정해도 되나요?

☞ 불가합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서의 항목을 수정, 삭제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8. 최종 제출을 완료했습니다. 이후 평가 단계에서 사업계획서 수정할 수 있을까요?

☞ 신청 마감일 이후 평가 기간 동안 사업계획서 수정은 불가합니다.

9. 정부지원금은 어떻게 배정되나요?

☞ 정부지원금은 사업계획서의 '3-3. 사업추진 일정 및 자금운용 계획' 항목과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차등 배분됩니다.

10. 선정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평가는 요건검토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최종선정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평가 결과는 평가(서류,발표) 단계 종료 후 주관기관에서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11. 발표평가는 반드시 영어로 해야 하나요?

☞ 네, Astellas본사 직원이 발표평가에 참여하기 때문에 발표 자료 및 발표 모두 영어로 진행이 됩니다.

12. 사쿠라보에 반드시 입주해야 하나요?

☞ 네, Astellas본사에서 운영하는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및 입주 공간 '사쿠라보(Saku Lab)'에 협약기간 동안 반드시 입주를 해야 합니다.

13. 사쿠라보 입주 시,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불가합니다. 사쿠라보 입주로 인해 발생하는 일본 현지 생활비 등은 자부담하셔야 합니다. 다만, 해당 프로그램 선정 시 지원받는 사업화자금으로 사업화 활동 관련 여비 등은 담당자 검토 후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붙임 6】 2025년 동시수행 불가 사업 목록

연번	창업지원사업명	소관 부처
사업화		
1	· 예비창업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2	· 초기창업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3	· 창업도약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4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중소벤처기업부
5	· 민관공동창업자 발굴육성 (TIPS 프로그램 - 창업사업화)	중소벤처기업부
6	· 민관공동창업자 발굴육성 (Pre-TIPS)	중소벤처기업부
7	· 민관공동창업자 발굴육성 (Post-TIPS)	중소벤처기업부
8	· 통합 창업패키지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9	· 창업중심대학	중소벤처기업부
10	·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중소벤처기업부
11	· 재도전성공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12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중소벤처기업부
13	· 예술기업 성장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4	· 스포츠산업 예비초기창업· 창업도약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5	· 스포츠산업 창업중기(엑셀러레이팅)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6	· 콘텐츠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7	· 콘텐츠 엑셀러레이터 연계사업화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8	· 콘텐츠 투자 연계 사업화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9	· 선도기업 연계 동반성장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20	·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사업	문화체육관광부
21	·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문화체육관광부
22	·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환경부
23	· 농식품 벤처 육성지원	농림축산식품부
24	· 경북·구미 방산혁신클러스터 전주기 방산 창업지원	방위사업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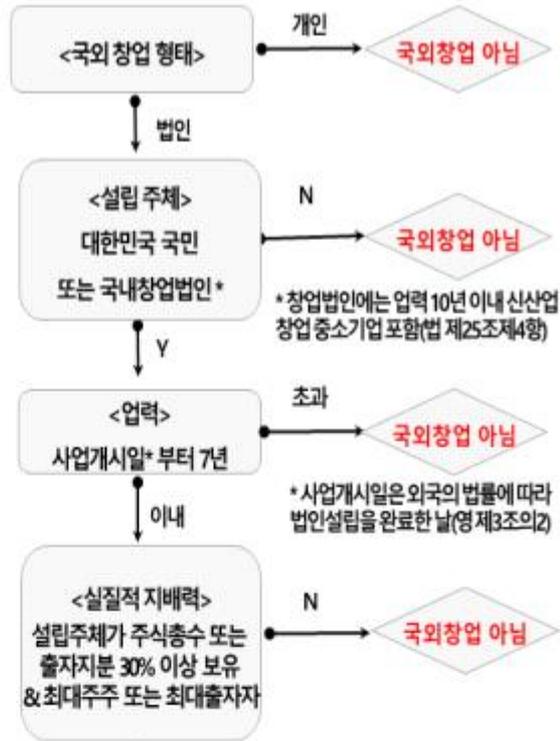
연번	창업지원사업명	소관 부처
사업화		
25	· 대전 방산혁신 클러스터 방산 진입형 드론평화 창업지원	방위사업청
26	· 데이터 활용 사업화 지원사업 (DATA-Stars)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글로벌		
27	· 관광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	문화체육관광부
28	· 창업성공패키지(글로벌창업사관학교)	중소벤처기업부
행사·네트워크		
29	·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붙임 7】 국외 창업기업 판단 절차 및 기준

<국외 창업기업 판단 절차 및 기준>

1단계: 국외 창업 판단

[관련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의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 제3조의2



2단계: 국외 창업기업 판단

[관련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호의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의2
창업기업 및 국외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제9조

